2024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- 현지 전문기관 자문 -

❍ **지원대상** : **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** *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외

❍ **지원품목** :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 * 공산품, 수산식품 지원 제외

❍ **지원내용**

구분	세부내용	지원비율
일반 자문	○ 통관 (제품 수출가능여부, 통관·검역사전검토,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등)	80%
	○ 법률 (국제계약서 작성, 현지법인 설립, 프랜차이즈 진출, 식품위생법 등)	
	○ 관세 (일반 관세율 및 FTA협정관세, HS코드 분류 등)	
	○ 위생·검역 (식품위생 기준, 신선농산물 검역기준 등)	
	○ 할랄 관련 전반적인 자문(인니, 말련, 중동에 한함) * 인증등록 비용 지원 X	
	○ 기타 (상세 문의사항은 온라인 신청페이지 문의내용에 작성바람) * 중국 해관 세 번 예비판정 자문 등 포함	
특수 자문	○ 미국 FSVP 관련 수출업체 컨설팅	
	○ 무역분쟁 및 클레임(각종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법률자문 등)	
	○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	

※ **'통관' 자문 선택시 '통관사전검토 신청서' 제출**

※ 그 외 자문은 신청서 제출 필요없으나, 진행과정 중 별도의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음

※ 홍콩,대만,유럽의 경우 국문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(영문이 기본), 국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[자문 문의내용]칸에 "국문 제공 희망" 요청 시, 국문으로 **자문 결과보고** 제공

❍ **진행절차 안내**

수출업체	aT해외지사	전문기관 ↔ 수출업체	aT → 전문기관
global.at.or.kr 로그인 > 사업신청 >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	사업접수 및 전문기관 배정 * 신청시 입력한 이메일로 연락드립니다	① 수출업체 → 전문기관 자부담 20% 해외송금 * 송금 수수료 지원 제외 ② 전문기관 → 수출업체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	국고보조 80% 지급

※ (예외) 홍콩/대만의 경우, 수출업체가 100% 선지급 후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시 자부담 20%와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80%를 환급하며, 환급시기는 3, 6, 9, 12월임 / `25년부터 예외없음

❍ **지원국가** : **<현지화지원 국가별 주요 안내사항 및 전문기관 현황>** 참고

*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·축소될 수 있으며,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❍ **유의사항**

▶ **자부담금 상당기간(1개월) 미입금, 서류 미비, 연락두절 등의 경우 사업신청이 취소 될수 있음**

▶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다년간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▶ aT와 약정체결 되어있는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현지화지원사업 자문만 지원 가능

▶ 한번에 1개 국가, 최대 5개 품목까지 신청가능하며, 그 이상인 경우 여러 건 신청

▶ 여러 건 사업신청 가능하나, **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**해야 하며, 신청 건당 자문비용은 사업 신청 후 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함

▶ **aT 사업 최초 신청 시 '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' 필수**

* 한국무역통계진흥원(www.trass.or.kr/at.jsp) 접속 > 사업자공동인증서로 동의하기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